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218-0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편람 [대학용]

2022. 8.

주관연구기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머 리 말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보다 양질의 체계적인 수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으로,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작업환경에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 이수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의 원칙과 기본만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유형에 따른 판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편람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용 편람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자체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편람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이 편람을 통해 인증신청기관은 인증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양질의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도모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가 우리나라 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로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제1장 평가인증 개요	1
1. 평가인증 실시 배경	
2. 평가인증의 필요성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주요 업무	
제2장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방향	3
1. 평가인증의 의미	
2. 평가인증의 기본방향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5
1. 인증기준위원회	
2. 인증평가위원회	
3. 인증판정위원회	
4. 재심위원회	
제4장 평가인증의 기대 효과	8
제5장 평가인증 과정	9
1. 평가인증 절차 요약	
2. 평가인증 흐름도	
3. 인증평가 수수료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13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4. 자체평가의 취지	
5. 자체평가의 절차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제7장 평가단 구성과 평가	26
1. 평가단 구성	
2. 서면평가	
3. 방문평가	
제8장 인증평가 결과(최종보고서) 작성 및 심의	29
제9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30
제10장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요청) 및 재심의	31
1. 이의신청	
2. 재심의	
3. 재심의 수수료	
제11장 판정 및 평정	33
1. 평가인증	
2.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3.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방법	
제12장 용어 정의	39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요약)	41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47
1. 조직 및 운영 영역	49
1.1. 교육목적과 목표	
1.2. 조직과 재정	
1.3. 전략과 계획	
2. 교육과정 영역	63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3. 교육과정 개선	
3. 학생 영역	85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2. 학생활동과 지원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4. 교수 영역	103
4.1. 전임교수	
4.2. 학생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117
5.1. 교육시설 및 설비	
5.2. 연구시설과 설비	
5.3. 시설설비의 관리	

부록.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131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135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137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140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142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145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재심위원회 운영지침	147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149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151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153

제1장 평가인증 개요

1. 평가인증 실시 배경

- 반려동물, 반려인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수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수의료는 보조인력과 함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수행
- 수의료 전문과목에 특화된 보조인력 필요
- 동물보건사 제도 필요성 대두
- 동물보건사 제도 수의사법 2019.8.27.에 공표, 2021.8.28.에 시행
- 동물복지 선진국 위상 확보
-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2. 평가인증의 필요성

-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양질의 수의료서비스 요구
-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 보장
- 동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의 특성에 따라 동물 간호, 수의사 보조를 위한 능력 보장
- 동물 보건 관련 지식 확보를 위한 교육이수 확인
- 동물보건 관련 실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동물병원 현장실습 확인
- 수의사법 제16조4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인증기준을 수립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필요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주요 업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편람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편람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진행 총괄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사항

제2장 평가인증의 의미와 기본방향

1. 평가인증의 의미

- 양성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본 교육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가 양성되도록 한다.
- 인증은 양성기관과 프로그램 운용 전반에 관한 것이다.
- 양성기관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2. 평가인증의 기본방향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을 위한 조직 및 운영 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목적과 목표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조직 및 재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 전략과 계획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 평가

- 졸업이수 규정 및 동물보건사 역량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
- 동물보건사 양성 교과목 및 실습 이수
- 동물병원 현장실습 이수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 품질 관리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평가

- 학생 지도체제와 운영
- 학생의 교육, 실습 및 활동을 위한 지원
- 학생 복지제도 및 시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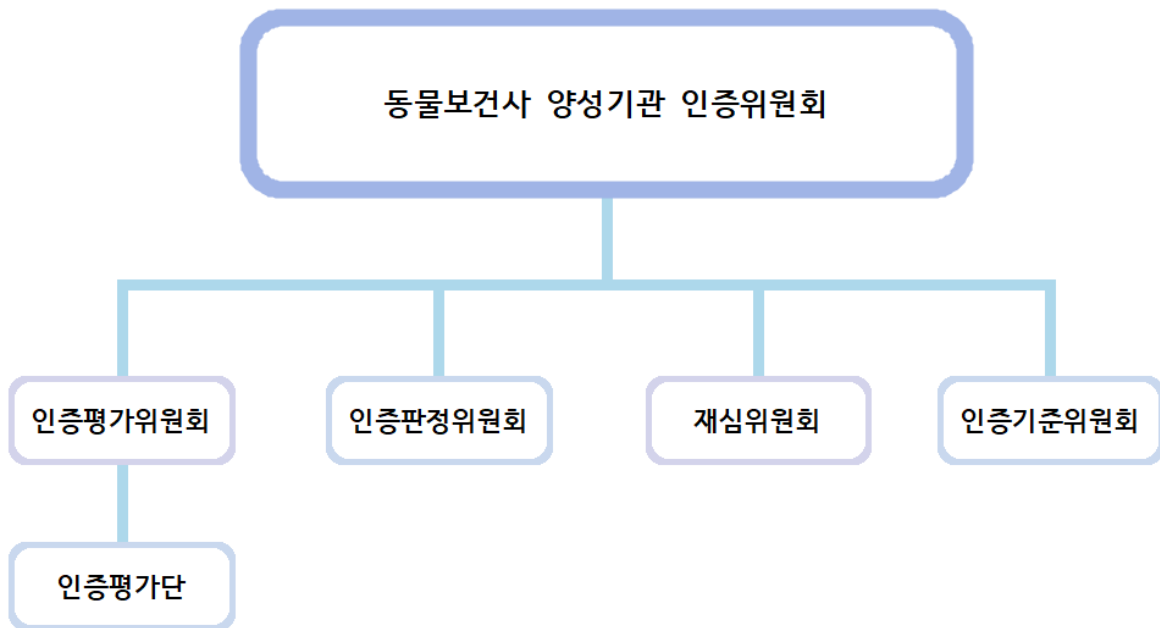
- 동물보건사 양성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수 확보
- 동물병원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수 지원 체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에 대한 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합한 실험·실습기자재 구비
- 시설 설비의 관리

제3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한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그 조직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조직

1. 인증평가위원회

□ 구성

- 인증평가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동보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위원 수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하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며,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단장을 추천함

□ 기능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 최종보고서 심의
- 연차보고서 심의
- 기타 위원회 관련 업무 사항

2. 인증판정위원회

□ 구성

- 인증판정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 수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학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2. 수의사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수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기능

-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인증 결과를 승인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를 확인
- 인증유형 판정

3. 재심위원회

□ 구성

-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비수의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

□ 기능

- 인증평가를 신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시 재심의
- 인증평가 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인증기준위원회

□ 구성

- 인증기준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위원을 동수로 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기능

- 인증기준의 개발, 수정, 보완
-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기타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의 업무

제4장 평가인증의 기대효과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 평가를 통해 인증 취득 및 교육 자체 점검과 자율평가 체제 구축

-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여 졸업생에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체계 확립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인증을 통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자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
- 인증평가를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내 시설 및 인적자원 확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사회 : 반려동물 산업에 기여 및 대학 교육의 질 보증과 신뢰 부여

-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정보 제공
- 동물보건사 교육에 대한 신뢰 부여
- 동물병원은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를 진료보조인력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수의료 서비스 의료체계 구축
-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보건사제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수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화 도모

□ 정부 : 동물보건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의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사회 안정화

- 효율적인 동물보건사제도 시행에 따른 수의료 서비스의 향상 주도
- 평가인증을 통해 정부 차원의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 표준화 기준 설정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성 확보
-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및 안정화에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동물복지 선진국 위상 확보

제5장 평가인증 과정

1. 평가인증 절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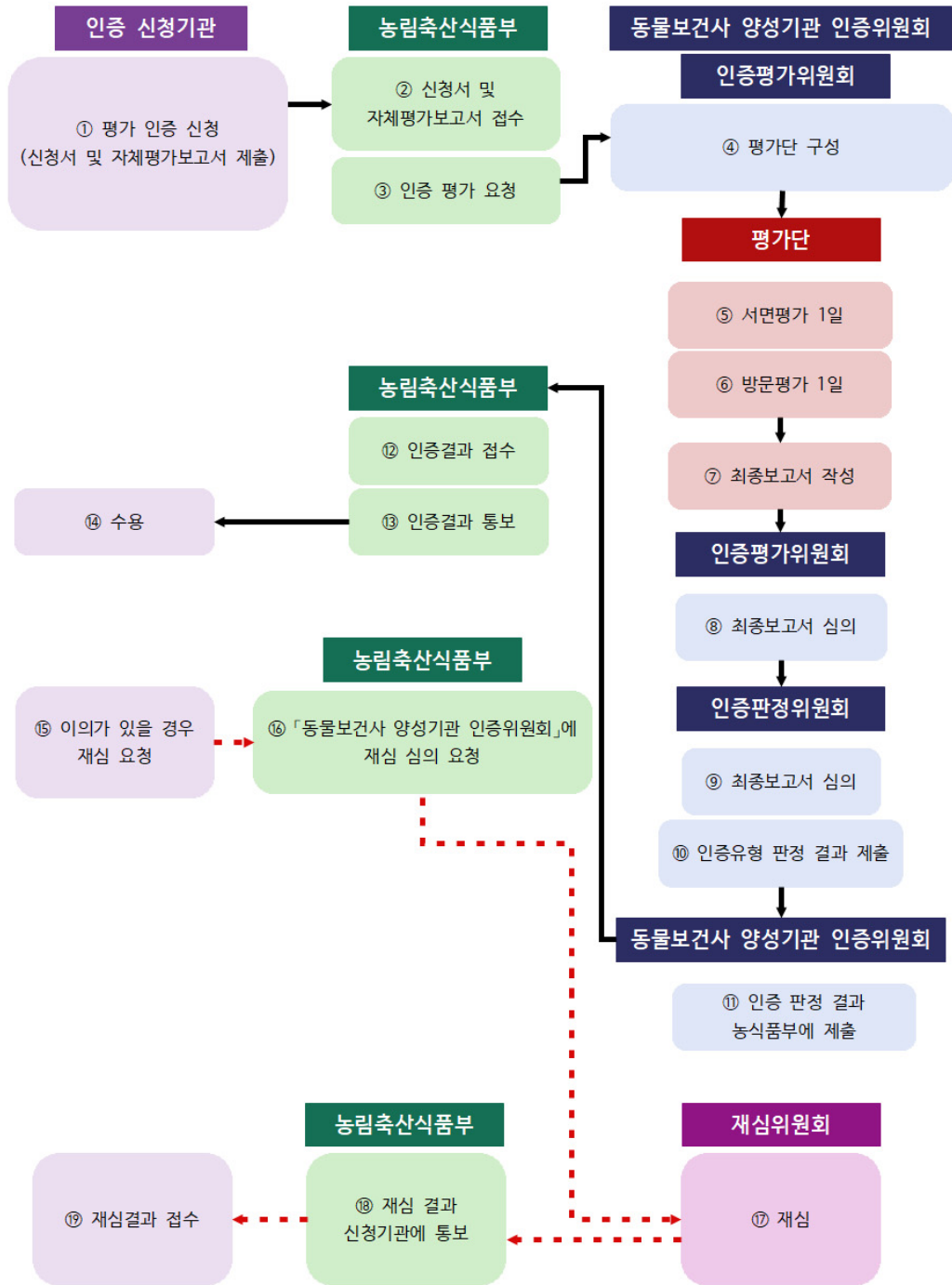
○ 인증은 평가인증 신청 이후 최종판정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됨

- 1) 평가인증 신청 : 인증신청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연도 인증 신청 일정에 따라 평가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양성기관의 인증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수행 요청
- 3) 평가단 구성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평가단 구성
- 4) 서면평가 : 평가단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 5) 방문평가 : 평가단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서면평가시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 6) 최종보고서 : 평가단이 방문평가 종료 후에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7) 인증평가위원회 : 평가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심의
- 8) 인증판정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판정 심의
-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 인증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0) 재심의 요청 : 신청기관에서 이의 신청 시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2. 평가인증 흐름도

- 1단계: 인증 신청기관이 평가인증 신청(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 3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인증평가 요청
- 4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가 평가단 구성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평가 대상 적합성 심의
- 5단계: 평가단 서면평가
- 6단계: 평가단 방문평가 (1일)
- 7단계: 평가단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
- 8단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9단계: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심의
- 10단계: 인증판정위원회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판정 결과 제출
- 11단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인증판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2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결과 접수
- 13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결과를 인증 신청기관에 통보 및 공고
- 14단계: 인증신청기관이 결과 수용
- 15단계: 인증신청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심의 요청
- 16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17단계: 재심위원회가 재심의 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8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심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
- 19단계: 인증신청기관이 재심 결과 접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절차 흐름도>



3. 인증평가 수수료

-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인증평가비)는 다음 항목에서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됨.
- 인증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결과 부적합의 경우 기 납부된 인증평가 수수료에서 10%를 제외하고 반환함.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1. 평가단 서면평가 수당	20만원×5명×1회	100만원	- 서면평가
2. 평가단 방문평가 수당	20만원×5명	100만원	- 방문평가
3. 평가단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원고료	50만원×5명	250만원	- 보고서 작성
4. 평가단 숙식 및 출장비	20만원×평가단 5명	100만원	1) 숙식비 10만원/1인 2) 출장비 10만원/1인
5. 인증평가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2회	400만원	1)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평가단 선정 2) 최종보고서 심의
6. 인증판정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 최종보고서 판정 심의
7. 동보위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인증평가 최종 승인 심의
8. 인증평가 총괄 관리 운영비	1.최종보고서 인쇄 제본비 : 2만원 x 10부 = 20만원 2. 회의실 대여료 : 10만원x5회(평가 단장 회의 1회 포함) = 50만원 3.회의 개최 경비: 10만원x5회 = 50만원 4. 평가단 교육비 1회 : 교육강사 수당 20만원x6인 =120만원 5. 사무국 관리비: 80만원	320만원	-사무국 관리비 1)회의자료 복사비: 15만원 2)평가자료 택배 송부료 : 10만원 3)경리 업무 지원 경비: 10만원 4) 농식품부 제출 보고서 작성비 (제본비 포함): 30만원 5)문구류 구입등 예비비 : 15만원
총 계			1670만원

- *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1인당 20만원
- * 평가단 평가수행(1~4항목) 총 경비 : 550만원
- * 위원회 개최(5~7항목) 총 경비 : 800만원
- * 평가단장 회의경비 : 계상 안됨

제6장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1.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의의

자체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학생, 시설·자원, 재정·행정실태, 발전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자체평가의 결과를 정리한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며 인증평가 절차에서 기본이 되는 필수 자료이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자료이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질적인 평가에서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전 인증평가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정량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2.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절차의 중요한 과정인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기본 자료이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이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사행정, 장·단점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본문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대학용 편람에 제시된 서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방문평가에 앞서 서면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 대상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체평가보고서 자료 제시 기간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기 직전 최근 2년간 또는 최근 4개 학기를 말한다(예: 2022년도 2학기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단, 직전 학기를 포함한 최근 4개 학기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2)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기 직전 최근 3학기 이상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3) 모든 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필수기준이다. (4) 참고자료의 [부록]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비치]는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아울러 [현장확인] 자료는 비치할 수는 없으나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이다.

4. 자체평가의 취지

자체평가는 평가대상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자체평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자체평가에서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과 문제점을 명료화하는 등 평가자 스스로가 소속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증명 그리고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증기준을 충족시킨 정도를 규명하게 되고,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기준에 적합한 역량 있는 동물보건사의 양성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자체평가의 절차

자체평가 절차는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자체평가 준비 단계
- ② 자체평가 실시 단계
- ③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단계
- ④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단계

다음은 각 단계별로 자체평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1단계. 자체평가 준비

첫째, 자체평가를 수행할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위원회로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교수와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영역별 담당 자체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주관으로 양성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영역별 자체평가위원은 항목별 참고자료와 비치자료를 참조하여 영역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만든 후 수집할 자료를 담당하는 교직원과 연락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자체평가의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자체평가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 평가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동시에 양성기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2단계. 자체평가 실시

각 영역별 평가 담당자는 대학용 편람 각 영역의 모든 부문별 평가항목과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내용'을 숙지한 후 수집된 자체평가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평가한다.

3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영역별 자체평가위원이 작성하여 종합한 후,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서식에 맞게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인증 신청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

4단계.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자체평가의 최종 목적은 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역량있는 동물보건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해 합당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체평가를 통해 양성기관은 특징과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결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서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이와 동시에 양성기관의 교육체계 발전을 도모한다.

6. 자체평가보고서 구성과 서식

(1) 머리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작성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자체평가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기술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평가 준비에 성실한 준비를 해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에게 대한 치하와 협조 기관에 감사의 말 등을 기술한다.

(2)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가. 목차의 구성

- 제1장. 머리말
- 제2장. 서론
- 제3장. 자체평가 결과
 - 1. 조직 및 운영 영역

2. 교육과정 영역
3. 학생 영역
4. 교수 영역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제4장. 종합 및 논의

별책부록 :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1) 머리말

머리말에는 자체평가 연구가 충분하게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였으며,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과 자체평가를 통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평가를 성실히 준비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직원에 대한 치하와 협조 기관에 감사의 말 등을 기술한다.

2) 서론

자체평가 목표, 내용, 방법 등을 평가의 기획에서부터 평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다. 또한, 평가의 준비와 계획, 자료 수집,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및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분석과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보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3)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있는 영역별 평가기준을 기술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각 평가영역별 결과에 대한 기술에서는 제시되어있는 내용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강점과 미비점을 제시하고, 미비점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발전계획을 기술한다.

4) 종합 및 논의

평가영역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맺는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특성 및 장점 등을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자체평가 결과의 건의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5) 별책부록

평가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는 평가 요구자료를 별책으로 제작한다. 또한, 책자나 자료를 방문평가에 대비하여 비치해 둔다.

6) 성과(outcomes) 중심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가인증 준비가 얼마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효율성과 혁신을 증가시켰는지 교육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수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고등교육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책무성을 입증한다.

(3) 제출방법

1) 규격

- 규격 : A4, 양면인쇄로 100 페이지 내외

2) 제본요령

- 자체평가보고서 : 15부
- 부록 : 15부(영역별 분리 제본)
- USB 또는 CD 1매 : 자체평가보고서와 부록(pdf 파일) 수록
- 기타: 자체평가보고서와 부록은 별도로 제본하며, 부록의 경우 영역별로 분리 제본

3)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4) 평가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일정

-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보위에 인증평가 요청
- 2단계: 평가단 구성
- 3단계: 서면평가 1일(동보위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 4단계: 방문평가 1일(서면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 5단계: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제출(방문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 6단계: 인증평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심의
- 7단계: 인증판정위원회 최종보고서 심의 및 인증유형과 기간 판정
- 8단계: 동보위는 인증판정 결과 최종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9단계: 신청기관에서 이의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을 받아 재심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서식

- 다음의 서식과 제시한 양식을 참고로 하여 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참고자료 중 동보위에서 제공하는 [표]나 양식은 본 자료의 뒷부분에 인증기준 개별 항목에서 서식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다.
- 본문과 부록을 통해 제시한 [표]는 크기는 조절할 수 있지만, 별도의 도움말이 없는 경우 임의로 항목을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 본문에 삽입되는 [표]는 기술 내용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기술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 서식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되, 글자체는 굴림체, 글자 크기는 제목 15포인트, 본문 내용 11포인트, 줄 간격 160%, 여백 좌우 25, 상하 30으로 설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20__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____대학(교)
연락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전화:
	H.P:
	이메일:
	주소:

20 년 월 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동물보건학과장 (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_____ 총장(학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마크

20〇〇년 〇〇월

〇〇 대학 〇〇동물보건학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20 년 월 일

○○대학(교) 동물보건학과장	(성명)	(직인)
○○대학(교)학장(총장)	(성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자체평가기획위원회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담당업무

자체평가위원회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작성 분야

목 차

제1장 머리말	00
제2장 서론	00
제3장 자체평가 결과	
1. 조직과 운영 영역	
1.1. 교육목적과 목표	00
1.2. 조직과 재정	00
1.3. 전략과 계획	00
2. 교육과정 영역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00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00
2.3. 교육과정 개선.....	00
3. 학생 영역	
3.1. 학생지도체제와 운영	00
3.2. 학생활동과 지원	00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00

4. 교수 영역

4.1. 전임교수00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00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00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5.1. 교육시설 및 설비00
5.2. 연구시설과 설비00
5.3. 시설설비의 관리00

제4장 종합 및 논의00

별책부록 :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7장 평가단 구성과 평가

1. 평가단 구성

○ 구성 절차

- 1단계 : 평가위원 pool 구성
- 2단계 : 평가위원 교육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워크숍 4시간으로 대체 가능)
- 3단계 : 평가위원 pool 후보자 중 평가단 구성(5명 이내)
- 4단계 : 평가단에 대한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제척사유 여부 확인
- 5단계 : 평가단 위원별 담당 평가영역 확정

2. 서면평가

○ 목적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평가 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실시함

○ 서면평가 주요 내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 목록 작성
- 방문평가 시 추가 검토 사항 작성
- 서면평가서 작성

3. 방문평가

○ 목적

- 자체평가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현장확인 및 평가
-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서면평가 활동 중 생긴 의문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검증하는 기회이고,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관계자들과 인증평가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평가 1일 세부 일정(예시)

[표 1] 방문평가 활동 일정 : 1일

구분	시간	주요 활동	비고
오전	08:50	■ 방문 평가 대상기관에 집결	
	09:00	■ 학장(동물보건학과장) 예방 ■ 평가위원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측 자체평가위원 상견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현황 청취 및 질의 응답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현황 발표 : 10분 이내
	09:30	■ 방문평가 계획 협의 및 추가자료 제출 확인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 자체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비치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확인 - 면담자 리스트 확인 및 면담 시간 협의	■ 평가위원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 자체평가위원 회의
	10:30	■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개시	■ 평가위원 및 대학 관계자
	12:00	중식(도시락)	(시간 엄수)
오후	13:30	■ 담당 평가영역별 평가활동 -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제출 증빙 및 추가 자료 확인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구성원 면담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시설 방문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 자체평가위원 및 관계자 면담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면담
	17:30	■ 당일 평가활동 종합 및 평가영역별 평가 결과 협의 ■ 최종보고서 작성방법 협의	■ 평가위원 회의
	18:00	■ 방문평가 종료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구성원 면담 및 시설 방문 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과 협의하여 확정함

○ 방문평가 시 주요 활동

■ 일정 조정

- 학장(동물보건학과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방문평가가 시작됨 (학장 부재 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평가 시작 시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계자와 평가단 간 전체 평가 일정 협의, 비치자료 및 추가요청 자료 확인, 면담대상자 확인 및 일정 조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시설 방문 장소 및 일정 논의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함
- 면담대상자 일정 조정 시에는 동보위에서 요청한 면담대상자의 수업 및 업무 일정을 조사하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면담 가능한 시간을 파악해 놓아야 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시설 방문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만으로 제한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에서는 사전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별 방문 시간표를 마련해 두어야 함

○ 방문평가 시 유의 사항

■ 평가일정 준수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에서는 학장(동물보건학과장) 예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현황 설명에 적절한 시간을 안배하여 정해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건전한 평가분위기 조성

- 건전한 분위기에서 방문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침에 어긋나는 접대와 불필요한 환영 행사를 절대 금함
-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계자와 식사는 절대 금함
- 평가를 마친 후에 평가위원은 바로 평가대상기관을 떠나야 하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측 관계자 동행은 일절 금함
- 점심식사는 교내 교직원 식당 또는 도시락 이용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간 중 모든 비용은 동보위에서 부담함. 어떠한 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함
- 평가자는 강압적인 질문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평가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이나 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제8장 인증평가 결과(최종보고서) 작성 및 심의

○ 목적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작성의 공정성과 적절성 검토 및 심의

○ 내용

- 평가단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방문평가 일정 중 평가위원이 각자 맡은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한 후 평가단장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검증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보고서를 종합 작성함
-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동보위에 제출함

- 인증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면 동보위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제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보위가 제출한 인증결과를 접수하여 인증결과를 해당 인증 신청기관에 통보 및 공고함

제9장 인증주기 및 인증유형

-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4단계로 구분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인증주기를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영역 모두에서 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에 해당한다.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 2항1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수의사법 제16조의4,2항2에 따라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제10장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1. 이의신청

-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
- 재심 요청을 접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보위에 해당 양성기관 인증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2. 재심의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동보위는 재심위원회를 소집한다.
- 재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3항에 따른다.
- 재심의 내용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최종보고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5항에 따라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 동보위는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보고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심결과를 제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재심결과를 해당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양성기관이 동보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수수료

○ 2021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2021.12.9.)에서 결의한 재심의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재심의 수수료(안)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재심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인증판정위원회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동보위 회의비	20만원×10명×1회	200만원	
운영비	1) 회의 소요 경비 20만원×3회= 60만원 2) 자료 인쇄 또는 제본비 20만원 3) 예비비 20만원	100만원	
총계		700만원	

제11장 판정 및 평정

1. 평가인증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함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함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2.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 완전인증(3년):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에서 적격 이상 및 인증기준 35개 항목 중 평점이 7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단축인증(2년):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단, 인증기준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이상이어야 함)
 -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됨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년 인증으로 제한함
- 인증불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
 -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 4의 2항1에 따라 '인증취소' 를 할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평가사항 중 첫 번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 단, 평가 시 유의사항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1호 2021년 11월 18일) 시행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함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평가	평정기준	평점*	비고
우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전 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적격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	전 항목 적격인 경우 총 평점 70점 이상
미흡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점	전 항목 미흡인 경우 총 평점 35점 이상
부적격	평가사항을 모두 또는 거의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점	총 평점 35점 미만

* 평점은 평가사항의 배점에 따라 적격, 미흡, 부적격의 경우 0.5점이 추가될 수 있음

3.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간 인증 유효)
단축인증	•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간 인증 유효)
인증불가	• 인증기간 미부여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간: 1년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방법

○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5개 영역, 15개 부문, 3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은 3~6개의 평가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사항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점수화 함 [표 1]

▶ [표 1] 영역, 부문, 항목별 평가사항 수

영역	부문 수 (번호)	항목 수 (번호)	평가사항 수
1. 조직 및 운영	1 (1.1)	1 (1.1.1)	3
		2 (1.1.2)	3
	2 (1.2)	3 (1.2.1)	4
		4 (1.2.2)	4
	3 (1.3)	5 (1.3.1)	3
		6 (1.3.2)	3
2. 교육과정	1 (2.1)	1 (2.1.1)	3
		2 (2.1.2)	5
	2 (2.2)	3 (2.2.1)	3
		4 (2.2.2)	3
		5 (2.2.3)	4
		6 (2.2.4)	5
	3 (2.3)	7 (2.3.1)	4
		8 (2.3.2)	3
3. 학생	1 (3.1)	1 (3.1.1)	3
		2 (3.1.2)	3
	2 (3.2)	3 (3.2.1)	3
		4 (3.2.2)	3
	3 (3.3)	5 (3.3.1)	3
		6 (3.3.2)	4
		7 (3.3.3)	5
		8 (3.3.4)	6
4. 교수	1 (4.1)	1 (4.1.1)	3
		2 (4.1.2)	4
	2 (4.2)	3 (4.2.1)	3
		4 (4.3.1)	3
	3 (4.3)	5 (4.3.2)	3
		6 (4.3.3)	3
		7 (4.3.4)	3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1 (5.1)	1 (5.1.1)	3
		2 (5.1.2)	3
		3 (5.1.3)	3
	2 (5.2)	4 (5.2.1)	3
		5 (5.3.1)	3
	3 (5.3)	6 (5.3.2)	3
계		15	35

○ 평가는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의 4단계로 분류된 평가기준을 점수화함으로써 평가 기준이 개념화되는 것을 피하고 수치로 표시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사항 수에 따른 평가 평점, 점수에 따른 인증유형, 평가 계산표는 아래 [표 2~5]와 같음.

▶ [표 2]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배점
3	각 평가사항 당 1점
4	1,2번 평가사항은 각 1점, 3,4번 평가사항은 각 0.5점
5	1번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 평가사항은 각 0.5점
6	각 평가사항 당 0.5점

▶ [표 3] 인증 유형별 판정기준

인증유형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단축인증 (2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2.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4.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 미흡 평가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산표”에 따라 각 영역별 소계점수가 미흡 기본 점수를 초과하고 적격 기본점수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 [표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산표

영역	부문	항목	평가사항 수	평가점수		
				우수(3)	적격(2)	미흡(1)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2.4.	5	3	2	1
	2.3. 교육과정 개선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체제와 운영	3.1.1.	3	3	2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3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4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0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3	3	2	1
		4.1.2.	4	3	2	1
	4.2. 현장실습지도 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2	21	14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3	3	2	1
		5.3.2.	3	3	2	1
		소계	18	18	12	6
	총계	120	105	70	35	

제12장 용어 정의

- **영역:** 인증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한다.
- **부문:** 각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한다.
- **항목:** 각 부문(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한다.
- **현장실습지도교원:** 양성기관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임교수는 동물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 **현장지도자:** 동물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의사로서 학생들의 임상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양성기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전국 수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병원을 지칭한다.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성기관 동물간호(동물보건) 관련 학과에 임용되어 주 3일 이상 전일제로 근무할 것
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것
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받을 것
- **입학정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 단위별(학과별; 주간·야간, 일반·산업체 등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각각 구분) 인원을 말한다.
- **편제정원:**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 **신설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 이상의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지칭한다.
- **동교협:**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의 약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7월에 사단법인 승인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협의체를 지칭한다.

- **동보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의 약어로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지칭한다.
- **교육품질관리(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평가, 개선 환류하는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말한다. 다만,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주체별 평가대상인 교수, 학생, 운영지원 등에 대한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3장 영역별 인증기준 (요약)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2. 동물보건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2.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2.1.2.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동물보건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습을 하여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 과 지원	3.2.1. 동물보건학과는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을 운영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4.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동물보건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국내·외 연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제14장 영역별 인증기준

1. 조직 및 운영
2. 교육과정
3. 학생
4. 교수
5. 시설 및 자원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2. 동물보건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1. 조직 및 운영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2. 교육목적과 목표가 대학과 동물보건학과 구성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기술한다.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기술하고,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과정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기술한다.
4. 기타 대학의 교육이념을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1-1. 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 자료, 회의록 등 기타)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가 설정한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의 학습성과 내용을 제시하고,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2.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s)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기술한다.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과정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을 기술한다.
3.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구성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술한다.

부록

- 1-1. 동물보건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학습성과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교육 학습성과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설문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와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 등에 학(과)장이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및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대학의 학칙에 따른 동물보건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동물보건학과와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이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동물보건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예산 편성 절차,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을 제시하고, 동물보건학과 예산 편성에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와 행정체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동물보건학과운영 규정, 인사규정, 업무 분장표, 조직표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3. 동물보건학과 운영지원 인력 중 행정전담 인력 확보 현황을 [표 1]에 작성하고, 확보기준에 맞게 확보되고, 행정전담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기술한다
4. 학(과)장의 현황을 [표 2]에 작성하고, 동물보건학 관련 전공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5. 동물보건학과장의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대학 인사 규정 혹은 동물보건학과 운영규정의 내용을 제시한다.

[표 1] 동물보건학과의 행정전담 인력확보(최근 2년)

연도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월일~년월일)
20XX	행정	김조교	조교	학사 행정	
		김직원	직원	학사 행정	
	수업	김조교	조교	실습 지원	
20XX					

* 행정전담 인력(직원 또는 조교) 확보 기준

학생 수(편제정원)	행정전담 인력 확보기준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160명 이하	1.5명 이상	1명 이상
161명 이상~320명 이하	1.5명 ~ 학생:인력 = 140:1 이상	1명 ~ 학생:인력 = 160:1 이상
321명 이상	2.3명 ~ 학생:인력 = 180:1 이상	2명 ~ 학생:인력 = 200:1 이상

[표 2] 동물보건학과장 현황(최근 2년)

연도	성명	보직 (동물보건학과장/학 장)	직위	전공	학위
20XX					
20XX					

부록

- 1-2. 동물보건학과 운영 규정
- 1-3. 대학과 동물보건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 1-4. 동물보건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비치자료

- 1-6. 대학 인사 규정
- 1-7. 동물보건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동물보건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9.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10.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현장확인

1. 교수면담

1.2.2. 동물보건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동물보건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동물보건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구성원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3. 동물보건학과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재학생 1인당 동물보건학과 예산 확보 현황을 [표 3]에 작성하고,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동물보건학과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동물보건학과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정을 기술한다.
3. 실험실습비로 편성, 집행한 예결산 내역을 [표 4, 5]에 작성하고, 집행률이 90% 이상 유지되는지 기술한다.
4. 동물보건학과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을 [표 6]에 작성하고, 집행률이 90% 이상 유지되는지 기술한다
5.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술한다.

[표 3] 재학생 1인당 동물보건학과 예산 확보 현황(최근 2년간)

학년도	동물보건 학과 재학생 수 (a)	동물보건 학과 등록금 (b)	동물보건 학과 등록금 수입총액 (c)	동물보건 학과 예산 총액 (d)	학생 1인당 동물보건 학과 예산 (e = d / a)	동물보건 학과 예산 집행 금액 (f)	동물보건 학과 예산 집행률 (g=f/d× 100)	전년대비 증감률 (당해 연도-전년도)/전년도×100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증감률	학생 1인당 동물보건학과 예산 증감률
20XX									
20XX									
평균									

【작성안내】

- 1) 동물보건학과 재학생 수(a):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의 학부과정 재학생 수를 뜻한다.
- 2) 동물보건학과 등록금(b): 학과별로 당해 연도 고지된 학생 1인당 연간액(1학기+2학기 등록금)을 뜻함. 입학금은 제외함.
- 3)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c): 당해 연도 연간 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입학금을 포함하며 결산 기준[정보공시 8-바-2 참조]으로 작성함.
- 4) 동물보건학과 예산 총액(d): 인건비, 건축비, 장학금, 자산성 경비 등을 제외함. 실험실습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비용(인증평가 수수료 제외), 교수개발비(학과예산으로 편성된 경우만 반영), 연수지원비, 세미나 개최비, 학생봉사활동 지원비 등 학과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교비회계만 해당함.
단, 실습실 구축을 위한 예산은 해당됨.
- 5) 동물보건학과 예산 집행금액: 학과예산 집행금액은 [표 5]의 연도별 계와 일치해야 함.
- 6) 전년대비 증감률: 동물보건학과 등록금(b)와 학생 1인당 학과 예산(e)의 각각의 증감률을 뜻함.

[표 4] 실험실습비 예결산 내역(최근 2년)

사용내역	20XX				20XX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교비	국고	교비	국고	교비	국고	교비	국고
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기자재 유지보수비								
실습지침서 제작비								
실습재료비								
실습지도 회의비								
실습지도 교통비								
실습지도비(현장실습 현장지도자 수당 혹은 실습기관 실습비 등)								
실습교과과정 워크숍비								
실습교재 개발비								
...								
계	(가)		(나)		(가)		(나)	

【작성안내】

- 1) 국고보조금은 실습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예산 및 결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
단, 실습 소모품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음.
※ 국고보조금 사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한함.
- 2) 계: (가), (나)는 교비에 의한 예산과 결산을 작성함(학부 과정 실험실습비 예결산만 해당됨).
- 3) [표 4] 사용내역의 내용은 예시임

[표 5]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및 예산대비 집행률(최근 2년간)

	재학생수 (a)	실험실습비 예산총액(b)	실험실습비 결산총액(c)	예산대비 집행률 (d=c/b×100)
20XX				
20XX				
평균				

【작성안내】

- 1) 재학생수(a):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의 학부과정 재학생 수를 뜻한다.
- 2) 실험실습비 예산총액(b): 교비에 의한 예산만을 포함한다.
- 3) 실험실습비 결산총액(c): 교비에 의한 결산만을 포함한다
- 4) 실습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책정하여 집행한 예산총액(b) 및 결산총액(c)에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단 실습 소모품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음.

[표 6] 동물보건학과 예산 대비 집행 현황(최근 2년간)

학년도	예산항목	예산 편성 금액 (a)	집행 금액 (b)	예산 집행률 c=(b/a)×100
20XX				
	계			
20XX				
	계			
평균				
	계			

부록

- 1-5. 동물보건학과 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비치자료

- 1-1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12. 동물보건학과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13.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14.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15.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1.3. 전략과 계획

1.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동물보건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연차별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활동 내용 및 실행 실적을 기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내용을 기술한다.

부록

1-7. 동물보건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서

비치자료

- 1-16. 동물보건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17. 동물보건학과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18.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한 예산을 기록하고 집행실적을 기술한다.
2.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부록

- 1-8.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비치자료

- 1-19. 동물보건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II.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2.1.2.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습을 하여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2. 교육과정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기반하여 대학과 동물보건학과의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론 교육, 교내 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목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교양, 전공과목,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이수학점 편성현황을 제시하고 이들 교과목이 균형있게 구성되었는지 기술한다.
2.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관련 규정에 의한 졸업이수 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3. 학과가 설정한 학습성과(Program outcomes)는 교과목 또는 교과목 외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표 7]과 [표 8]에 기술한다.

[표 7] 학습성과와 연계된 교과목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	교과목			
	1학년	2학년		
1.	<i>교과목명</i>			
2.		<i>교과목명</i>		
3.				
4...				

【작성안내】

학습성과: 1.1.2에서 설정한 학습성과 참조

[표 8] 학습성과와 연계된 교과목 외 활동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	교과목 외 활동			
	1학년	2학년		
1.	<i>교과목 외 활동명</i>			
2.		<i>교과목 외 활동명</i>		
3.				
4...				

【작성안내】

학습성과: 1.1.2에서 설정한 학습성과 참조

부록

2.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비치자료

- 2-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 2-2. 학습성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 학점 이상인가?
2.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과 운영이 적절한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을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는가?
4.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을 최소 9학점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는가?
5.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을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표 9]에 작성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전공교과목(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외 양성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과목(예,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2. 학년별 편제정원의 80% 이상의 학생이 해당 학기에 개설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전공과목을 이수하였는지 기술한다.
3. 필수전공교과목을 분야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으로 개설하여,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에 부합하는지 [표 10]에 작성한다. 단, 이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학점을 말한다.

[표 9] 교육과정 편성 현황(최근 2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년						2학년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교양선택																
교양필수																
교양소계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양합계																
전공합계																
교과총계																

【작성안내】

1. 현재 학년별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을 표를 구분하여 작성함.
2. 분류: 대학의 이수구분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학기, 교과목명, 최소이수학점은 동물보건사양성기관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표 10] 학과의 필수전공교과목 편성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이론	실습	계
1	기초예방				
	임상 복지				
	소계				
2	기초예방				
	임상 복지				
	소계				
동물병원현장실습					
합계					

부록

- 2-2.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췌)
- 2-3.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 양성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 등)

비치자료

- 2-3.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4.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2-5. 필수전공교과목 출석부(최근 2년)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분 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보건행동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 현장실습		2학점
15과목			40학점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이론	실습	계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1	2	3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1	2	3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1	2	3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1	2	3	
소계			12	8	20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1	2	3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1	2	3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1	2	3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1	1	2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1	1	2		
소계			10	8	18	
동물병원현장실습			0	2	2	
합계			22	18	40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이론	실습	계	
1	기초예방	동물보건영양학	3	0	3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1	2	3	
	복지	반려동물학	2	0	2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0	3	
	임상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1	2	3	
	복지	동물공중보건학	3	0	3	
	복지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1	2	3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1	2	3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1	2	3	
	임상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1	2	3	
	임상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1	1	2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1	1	2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1	2	3	
	복지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2	0	2	
동물병원현장실습			0	2	2	
합계			22	18	40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동물보건사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학과에서 설정한 학습성과를 기술한다.
2. 평가방법과 도구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표 11]에 기술한다.
3.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개선이나 학습성과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표 11] 필수전공 교과목별 평가체계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	필수전공교과목	학습성과 평가방법
		지필고사
		팀 프로젝트
		과제

【작성안내】

학습성과: 1.1.2에서 설정한 학습성과 참조

부록

2-5. 필수전공교과목(이론, 실습)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비치자료

2-6. 필수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년)

2-7.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과 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교과목 특성에 따라 동물보건학과가 이론강의실과 실습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최근 4개 학기 필수 전공이론 및 실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 현황을 [표 12]와 [표 13]에 작성한다.

[표 12] 이론 강좌당 학생 수(최근 4개 학기)

이수 구분	20XX년				20XX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계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평균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표 13] 실습 강좌당 학생 수(최근 4개 학기)

이수 구분	20XX년				20XX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강좌명	학생 수
계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평균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a)개	(b)명

【작성안내】

1) 개설 강좌명: 분반인 경우, 별도의 강좌로 구분하여 작성함.

※ 이론 및 실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이론교육을 운영하는 시간의 분반과 학생 수를 실습시간과 분리하여 작성 (예: 동물보건내과학실습, 동물보건외과학실습 등)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2-8. 필수전공 이론교과목 강좌별 출석부

2-9. 실습실 사용일지 및 필수전공 실습교과목 분반별 출석부

2.2.3.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는가?
2.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시수 대비 40% 이상인가?
3.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술하고, [표 14]에서 제시하는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을 졸업 예정학년의 학생 80% 이상 이수하였는지 기술한다.
2. 최근 4개 학기 입학생의 실습실 교육에서 교과목별 학점, 이수시간 등을 검토하여 필수전공 교과목 총 시수 대비 40% 이상인지를 기술한다.
3.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술한다.
4.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지 기술한다.
5.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개선이나 학습성과 관리에 반영한 결과를 기술한다.
6. 현장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세부 실습내용을 이수 실습 과목별로 기술한다.

[표 14] 동물병원 현장실습 과목 및 내용

현장실습 과목	교육내용	현장실습 과목	교육내용
동물보건내과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환자의 핸들링과 진료 보조 • 건강검진 • 검사 보조 • 전염병환자 관리 • 외래환자 진료 보조 • 입원환자 간호 • 중환자 간호 	동물보건응급간호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동물환자 평가 • 응급상황별 이해 및 처치 보조 • 응급실 준비 • 응급처치의 기본 원리 • 응급동물 모니터링 및 관리 • 응급약물 관리
동물보건외과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실 관리 • 기구 등 멸균 방법 • 봉합재료 종류 및 용도 • 수술도구 종류 및 용도 • 수술 전 준비 • 수술 보조 • 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 후 관리 • 지혈법 및 배액관 장치의 이해 • 창상의 관리 및 봉쇄법 • 동물재활치료 보조 	동물보건영상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발생원리 및 작동법 •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 방사선 촬영준비 • 촬영 부위에 따른 자세잡기 • 조영촬영 방법 • 초음파의 원리와 동물환자 자세잡기 및 기기 관리
동물보건임상병리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실험실 안전과 장비 • 각종 검체 준비 및 관리 • 현미경 원리 및 사용법 • 분변·요·피부·귀 검사 • 혈액 검사 • 배란주기 검사 • 호르몬 검사 • 실험실 의뢰 검사 	의약품관리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리학 기초 • 약물도포 • 경구투여 • 약제 관리
동물병원실무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실무 서론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고객 관리) • 동물병원 마케팅 • 수의의무기록(진료기록부 관리)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출입국 관리 • 동물병원 위생관리(환경 관리) • 동물병원 물품 관리 		

부록

- 2-6.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 이수 내용 및 실적(최근 4개 학기)
- 2-7. 현장실습 주차별 실습계획서(최근 2개 학기)

비치자료

- 2-10. 교육과정편성표 등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 자료
- 2-11. 강의시간표
- 2-1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13. 필수전공 실습교과목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침서
- 2-14. 학생이 작성한 교내 실습일지(최근 4개 학기)
- 2-15. 학생이 작성한 동물병원 현장실습일지(최근 4개 학기)

※ 전공필수실습교과목 시수

<p>전공필수실습교과목 (총 10과목, 18시수 이상으로 자율 조정)</p>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1 시수)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1 시수)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2 시수)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2 시수)
	동물병원 현장실습(2 시수, 변경 불가)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습을 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은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 확인은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지도 및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술내용

1. 현장실습기관의 현황(대한수의사회 인증 동물병원 및 동물보건학과와의 협약 여부)을 기술한다.
2. 대학 현장실습절차 등에 관한 규정(또는 지침)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을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4. 동물병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는지 기술한다.
5.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의 임상실습지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부록

2-8. 동물병원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비치자료

- 2-16.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17. 현장실습운영규정
- 2-18.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 2-19. 학생 활용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의 임상실습 지도 자료(최근 4개 학기)

2.3 교육과정 개선

2.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를 연 1회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3.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품질을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자격시험 시행연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응시인원의 평균(최근 2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로서 관련 규정, 조직 구성, 예산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최근 2년간 해당 조직의 활동실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기술한다.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를 갖추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기술한다.
3. 최근 2년간 학과의 교육품질관리,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품질을 주기적으로 개선한 실적을 기술한다.
4. 최근 2년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 현황을 [표 15]에 작성하고,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표 15] 졸업생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 현황(최근 2년)

연도	동물보건사 합격 현황 (단위: 명, %)		
	응시인원 (A)	합격인원 (B)	합격률(%) (B/A×100)
20XX			
20XX			
평균			

【작성안내】

1. 동물보건사국가시험 합격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접수인원(가), 응시인원(A), 합격인원(B)은 이전 연도 졸업생 중 재응시자를 포함하지 않음.

부록

- 2-9.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최근 2년)
- 2-10.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비치자료

- 2-20.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규정
- 2-2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2.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3.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4.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자료
- 2-25.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체계가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가 참여 학생의 50% 이상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이 있는가?

기술내용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참여 학생의 50% 이상에 대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 실적이 있는지 기술한다.

부록

- 2-11.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비치자료

- 2-26.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3. 학생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동물보건학과는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을 운영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3. 학생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안전한 임상실습이 시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체제와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학생 지도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주요 내용, 지도교수 제도, 학생 지도 결과의 활용 등 동물보건학과 학생 지도 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최근 4개 학기의 교수별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을 [표 16]에 작성하고,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다만, 전임교원이 1명일 경우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상담이 연 1회 이상(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편제정원의 50% 이상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한다. 전임교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상담 실적의 합이 각각 100% 이상이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16] 교수별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교수별 지도 학생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교수명	배정 인원	횟수	횟수	회당 평균 인원
20XX	1					
	2					
20XX	1					
	2					

【작성안내】

- 1) 교수명: [표 16]의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 명단과 일치하도록 작성함.
- 2) 학생 상담 및 지도 실적: 3.1.2. 학생 지도 프로그램, 3.2.1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과는 구별 되어야하므로 동일한 실적을 3.1.1과 3.2.1에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함.
- 3) 횟수: 교수별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한 횟수를 기재함. 예)20명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1회 씩 상담한 경우 20회로 기재.
- 4) 집단상담 : 한 번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비치자료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이 있는가?

기술내용

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현황을 해당 프로그램 목적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2. 최근 4개 학기의 학교생활 적응, 인성 함양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표 17]에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3. 최근 4개 학기의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을 기술한다.

[표 17] 학생 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구분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주관	대상 및 인원	지원금액
20XX	1							
	2							
20XX	1							
	2							

【작성안내】

- 1) 구분: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진로 설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학과 설명회, 적성검사, 졸업생 교류, 멘토링, 취업분야 전문가 교류, 인성 함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됨(단, 3.1.1의 학생 상담 및 지도실적, 3.2.1의 교과 외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과 구분하여 작성함).
 - 동물보건학과 적응: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과 적응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인성 함양: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내면의 성숙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진로 설정: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 2) 주관: 동물보건학과, 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교내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학과가 참여한 경우, 학과 특성에 맞추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된 프로그램이어야 함.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비치자료

3-4.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
(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3-5.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동물보건학과는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을 운영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교내실습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동물보건학과가 마련하고 있는 규정 또는 절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보험 가입 현황, 비상연락망 체계 배포 등을 포함한 동물보건학과의 실습 안전관리 대책을 기술한다.
3.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수/학생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기술한다.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비치자료

- 3-6.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7.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8.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활동,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이 있는가?

기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 동물보건학과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운영 현황을 [표 18]에 기술한다. 2. 학생의 학내외 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히 기술한다. 3. 학생의 학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지원 현황을 [표 18]에 작성한다.

[표 18]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 현황(최근 2년)

학년도	영역	활동명	대상	인원	주요활동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20XX	학술						
	동아리 활동						
	봉사						
	기타						
20XX	학술						
	동아리 활동						
	봉사						
	기타						

【작성안내】

- 1) 학내 외 학생 활동: 학생회나 동아리 등 공식적으로 등록된 활동 외에도 학술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학생이 주최하는 활동을 뜻함. '3.1.1 항목' 또는 '3.1.2 항목'의 실적과 구분하여 작성함.
- 2) 지원금액: 교비, 국고지원비 지원금이 모두 해당됨. 단,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함.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비치자료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3-10.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정·재정지원 관련 자료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2년간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총액, 교내외 장학금 금액 등 장학금 수혜 현황을 [표 19]에 작성하고,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고 있는지 기술한다.
2.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최근 2년간 동물보건학과 학생이 수혜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수혜인원, 지급액 등을 포함한 지원 실적을 [표 20]에 작성한다.

[표 19] 장학금 수혜 현황(최근 2년)

연도	학기	재학생 수(A) (단위: 명)	교외 장학금 (단위: 원)	교내 장학금(B) (단위: 원)	교내외 장학금 계(C) (단위: 원)	재학생 1인당 교내외 장학금(D=C/A) (단위: 원)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총액(E) (단위: 원)	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 (F=B/E×100))
20XX	연도(계)		가=g+g'	나=b+b'	다=c+c'	라=d+d'	마	바=나/마×100
	1	a'	g'	b'	c'=g'+b'	d'=c'/a'	X	X
	2	a	g	b	c=g+b	d=c/a		
20XX	연도(계)							
	1						X	X
	2							
평균	연도(계)							
	1						X	X
	2							

【작성안내】

- 1) 재학생 수(A): 당해 연도 4월 1일(1학기), 10월 1일(2학기) 기준의 학과 재학생 수를 뜻한다.
 - 2) 장학금: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교내외 장학금에 한함.
- * '원' 단위로 작성함.

※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B), 교내·외장학금 계(C)는 [정보공시 12-다-1] 값과 같아야 함.

- 3)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총액(E): 당해 연도 해당 학기의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결산 기준[정보공시 12-다-1 참조]으로 작성함.
- 4)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F): 교비에 의한 교내 장학금만 해당됨(단, 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으로 지급한 장학금은 포함).
- 5)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12-다-1] 참조

[표 20] 교내 장학금 지원 실적(최근 2년)

연도	학기	구분	장학금명	수혜인원	총지급액	장학금 지급기준
20XX	1					
	2					
20XX	1					
	2					

【작성안내】

- 1) 구분: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동물보건학과 분류 장학금명이 있는 경우 명시함) 등으로 기재함.
- 2) [정보공시 12-다-1] 참조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비치자료

- 3-11. 장학금 지급 규정
- 3-1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1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3.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4.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학생을 위한 휴게실 확보 현황 및 위치 등을 포함하여 [표 21]에 작성한다.
2. 학생을 위한 개인용 사물함 및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및 이용현황 등을 포함하여 [표 22]에 작성한다.
3.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거나 개선한 실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21] 학생휴게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전용/공용	구분	확보현황		실별수용인원	비품 및 기자재 품목/수량	사용가능시간	당해연도 편제정원
			전체면적 (단위:m)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20XX		학생 휴게실						
20XX		학생 휴게실						

【작성안내】

- 1) 학생휴게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 2)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표 22] 학생 편의시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전용/공용	시설명	위치	이용 대상자	수용가능 인원	기자재 및 비품현황	유지관리 방법	관리담당
20XX								
20XX								

【작성안내】

- 1) 학생복지 및 편의시설: 자율학습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사물함 등을 뜻함.
- 2) 장애인 편의시설
- 3)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 4) 유지·관리 방법: 시설 및 기자재별 관리 주체, 점검 시기, 점검 방법, 유지·관리 현황 기록 등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비치자료

- 3-14.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15.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16.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에 대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학생을 위해 기숙사 시설 현황과 기숙사의 수요 대비 공급 비율 등을 기술하고, 기숙사가 없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지원한 실적을 기술한다.
2. 기숙사 배정이 공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내 규정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3. 타 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기준을 기술하고, 배정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지를 기술한다.
4. 기숙사와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을 기술한다.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또는 기숙사시설 임대차 계약서

비치자료

- 3-17.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3-18.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19. 동물보건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실적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학생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상담을 위한 체제(보건진료실 또는 병원을 직접 이용하는 제도 등), 인력 현황 및 이용 실태를 기술한다.
2. 기본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기술한다.
3.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4.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상담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한 실적을 기술한다.
5. 보험가입 현황, 비상연락망 체계 배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동물보건학과의 안전관리 대책을 기술한다.
6. 학생 건강검진(정신건강 상담 포함 연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질병예방 활동 현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부록

- 3-9. 보건시설(보건 진료실 또는 병원) 및 인력 현황
-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비치자료

- 3-20.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21. 보험가입 증빙자료, 건강검진 실적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실적

4. 교수

4. 교수

4.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동물보건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국내·외 연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4. 교수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학 분야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교수는 대학의 행정·재정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사 및 연구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히 관리하여야 한다.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기술내용

1. 전임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전임교원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기술한다.
2. 전임교수의 지원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3. 전임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기준 및 현황을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4-1. 교원 인사규정(대학 규정, 동물보건학과 내규)
- 4-2.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3. 전임교수 임면 관련 공문(최근 2년)

4.1.2. 동물보건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필수전공 교과목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수의학 석사학위 또는 동물 보건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가?
3. 동물보건학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수 확보율을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4. 전임교수는 매 학기 필수전공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입학정원 30명당 수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수가 1명 이상인지 기술한다(단,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까지 특별전형 인원을 포함한다. 예: 입학정원 30명인 경우 특별전형 3명까지 입학정원으로 인정한다).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필수전공교과목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지, 담당 교과목의 수업지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표 23]에 기술한다.
3.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 현황 및 전임교수 확보율을 [표 24]에 작성하고 전임교수 확보율이 5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기술한다.
4. 전임교수가 매 학기 담당하고 있는 필수전공교과목을 기술하고, 담당교과목의 수업지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표 23] 필수전공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현황

연도	담당교수명	수의사면허 소지여부	담당교수 전공 (최종학위명)	필수전공교과목명
20XX				
20XX				

[표 24]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 확보율(최근 2년, 당해 연도 3월 및 9월 기준)

연도	동물보건학과 편제정원(명) (A)	동물보건학과 입학정원(명) (B)	교원법정정원 확보기준 (C=A/20)	전체 전임교수 수 (D)	수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수 수 (E)	수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F=B/E)	전임교수 확보율(% (G=D/C×100)
20XX	120	60	6	3	1	60	50%
20XX	120	60	6	2	2	30	33.3%
평균							

【작성안내】

- 1) 전임교수 확보율: 당해 연도 3월 및 9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단, 이후 전임교수 확보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전임교수 확보율을 별도로 작성함. 연구년 및 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도 확보율 산정 시 포함함.
- 2) 편제정원: 당해 연도 편제정원으로 동물보건학과의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함.
- 3) 교원법정정원 확보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의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예: 환산인원이 6.1명일 경우 7명) 산출)
- 4)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계약제 전임교수)의 경우 대우 수준이 전임교수에 준하고, 재임용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전임교수로 포함함.
- 5) [정보공시 6-가], [정보공시 6-나], [정보공시 6-다]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함.
- 6) [표] 안의 표시 내용은 예시임

부록

4-1. 전임교수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비치자료

- 4-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 4-6.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배당표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동물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어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4개 학기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한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현황을 [표 25], [표 26]에 작성하고,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2. 최근 4개 학기 현장실습을 담당한 현장지도자 현황을 [표 26]에 작성하고,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3. 최근 4개 학기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가 실습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이나 협의를 실시하였는지 기술한다.

[표 25] 현장실습지도교원 현황(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담당교수명	수의사면허 유무	지도학생 수	지도시간
20XX	1				
	2				
20XX	1				
	2				

【작성안내】

- 1) 지도시간: 해당 대학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작성함.

[표 26] 현장지도자 현황(최근 4개 학기)

연도	학기	실습기관명	현장지도자				
			성명	직위	최종 학위	수의사 면허 유무	임상경력
20XX	1						
20XX	2						
20XX	1						
20XX	2						

【작성안내】

- 1) 실습기관명: 모든 실습기관 및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지도자의 현황을 기재한다.
- 2) 직위: 실습기관에서 현장지도자에게 부여한 직위 명을 기재함.
- 3) 임상경력: 수의사면허를 보유한 후, 진료수의사로 등록하여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

부록

4-2.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가 명시된 배치표(최근 4개 학기)

비치자료

- 4-7.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8. 현장지도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 4-9.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연간 평균 15 시수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최근 2년간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 현황을 [표 27]에 작성하고 연간 평균 수업 15 시수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가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표 27] 전임교수 주당 수업시수(최근 2년)

학년도	교수명	담당필수 전공과목명	1학기	2학기	연간 평균	
			주당시수 (a)	주당시수 (b)	주당시수 (a+b)/2	
20xx						
20xx						
계						
평균						

【작성안내】

- 1) 시수 : 대학에서 인정받는 시수를 기재하며, 팀티칭인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시수를 학기당 평균으로 산출하여 기재함.
- 2) 분반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함.

부록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비치자료

4-10. 동물보건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4-11.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국내·외 연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사항

1. 교수는 국내·외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였는가?
2. 국내·외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3. 국내·외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지원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전임교수가 참여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을 [표 28]에 기술한다.
2. 대학이 전임교수의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기술한다.

[표 28] 전임교수의 연수프로그램 참여 현황(최근 2년)

연도	교수명	참여 프로그램명	참여시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20XX					
20XX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4-1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지원 규정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
- 4-13.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및 연수지원 관련 예산·결산 자료

4.3.3.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사항

1. 교수는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하였는가?
2.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3.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학과 전임교수가 참여한 동물보건 관련 학회에 참여한 현황에 대해 [표 29]에 기술한다
2. 대학이 전임교수의 국내·외 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기술한다.
3. 대학이 전임교수의 국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한 실적을 기술한다.

[표 29] 전임교수의 학회 참여 현황(최근 2년)

연도	교수명	참여 학회명	참여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20XX					
20XX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4-14.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의 참여 지원 규정
- 4-15.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의 참여실적 증빙자료
- 4-16.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지원 예산·결산 자료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기술내용

1. 대학이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2. 전임교수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논문, 특허, 저·역서 등을 포함한 활동 실적 등을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4-17.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18.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19.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20.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5.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학습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편제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을 각각 학생 1인당 $1.5m^2$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다만, 강의실 및 실습실은 동물보건사 필수교과목을 운영하는 장소에 한한다.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은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에서 제외한다.)
2.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동물보건학과 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다만, 실습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은 동물보건사 필수전공 교과목과 관련한 실습 및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에 한한다.)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회의실, 자율학습실, 휴게실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다만, 동물보건학과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평가한다.)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현황을 [표 30]에 작성하고, 학생 1인당 확보 면적이 요구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의 교육기본시설로서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등의 시설 확보현황과 시설 설비현황(조명, 방음, 환기, 냉난방시설 등)을 [표 31]에 기술한다.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 확보 및 이용현황 등을 기술한다.

[표 30] 동물보건학과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현황

연도	편제 정원 (a)	강의실 및 실습실 현황			학생1인당 강의실면적 (b/a)	학생1인당 실습실면적 (b/a)
		종류	면적(m ²) (b)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20XX		강의실				
		실습실				
20XX		강의실				
		실습실				

【용어 정의 및 작성안내】

- 1) 실습실: 필수실습교과목의 실습을 실시하는 공간
 - 2) 실습실 종류 : 동물보건학 교육관련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에 한함.
 - 4)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표 31] 동물보건학과 교육기본시설 확보 및 관리 현황

연도	구분	확보현황			실별 수용인원	시설비 현황	유지·관리 방법	당해연도 편제정원
		개수	전체면적 (단위:m ²)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20XX	강의실							
	교수연구실							
	동물보건학과 사무실							
	회의실							
20XX	강의실							
	교수연구실							
	동물보건학과 사무실							
	회의실							

【작성안내】

- 1) 위치: 캠퍼스명, 건물명, 층수 등을 제시함.
- *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별 캠퍼스명을 구분하여 기재함.
- 2) 유지·관리 방법: 시설 관리 주체, 점검 시기, 점검 방법, 유지·관리 현황 기록 등
- * 전용/공용 모두 작성함.
- 3) 구분은 작성 예시임.

부록

- 5-1. 실습실 도면
- 5-2. 강의실 및 실습실 운영현황 자료(강의시간표 등)

비치자료

- 5-1. 동물보건학과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2. 동물보건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학생과 교수가 이용할 수 있는 학술자료(국내외 도서자료, 전자자료, 온라인 학술정보서비스 등) 등의 확보 현황을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 학생과 교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화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기술한다.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현황과 집행된 실적을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4.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입학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를 동물보건학과 내에 100% 확보하고 있는가?
2. 대학 또는 동물보건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가 보유한 필수 기자재 목록 및 현황을 작성하고 입학정원 30명을 기준으로 100%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술한다(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까지 특별전형 인원을 포함한다. 예: 입학정원 30명인 경우 특별전형 3명까지 입학정원으로 인정하며, 그 이상의 인원은 별도의 기자재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보건학과가 보유한 필수 기자재의 사용 및 유지 및 관리 현황을 기술하고 대학 또는 동물보건학과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한다(필수 기자재는 반드시 학과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3. 동물보건학과의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구비 및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 2년)
-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 2년)
-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 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리 상태	최소충족조건 (입학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 골격 모델				3
	고양이 골격 모델				1
	분리형 장기모형 (개)				1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1
동물보건의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2
	네블라이저				1
	도플러혈압계				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수술대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원심분리기				1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1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글/납장갑/납복 (set)				1
	촬영 자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	기초훈련장비 set				1

5.2. 연구시설 및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 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 가 적절한지 기술한다.
3. 연구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 시설 등)
-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동물보건학과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2. 동물보건학과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실적을 기술한다.
3. 기본시설과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대학의 규정 및 체계에 대해 기술하고, 운영실적을 기술한다.

부록

5-3.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비치자료

- 5-13.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규정이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리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기술내용

1.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 학내 제반시설의 환경(조명, 환기, 실내오염)과 접근로(계단 등)의 안정성 확보 현황을 기술한다.
2. 사고 및 재난 등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장치의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 기술한다.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과 전담부서에 대해 기술하고, 점검, 수리 및 개선실적 등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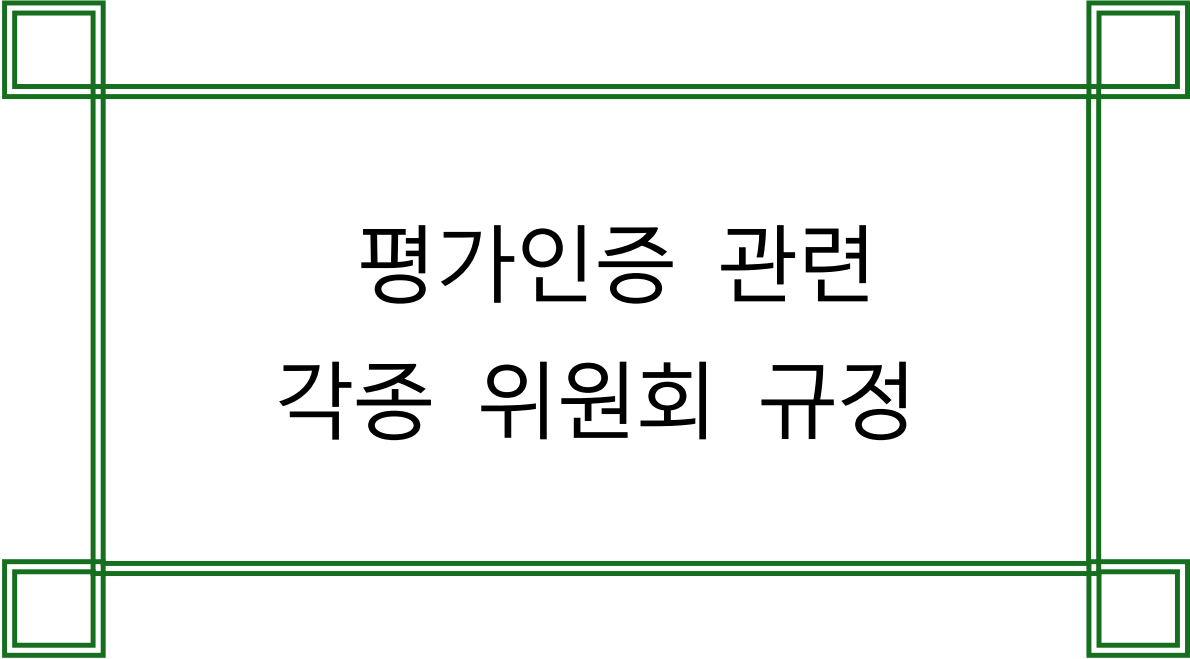
부록

- 5-4.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5.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비치자료

-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록]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규정

1. 제반 규정 제정 : 2021.06.23.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및 평가인증 윤리지침 :
2021.07.01.

2. 전체 규정 개정 심의 : 2022.07.06.

◎제 규정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승인:
2022.08.30.

목 차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재심위원회 운영지침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 정관 제4조1항의7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요청사업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수인원 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회장이 맡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수인원과 동교협이 추천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제정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대학용 평가 편람 제정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평가자용 평가 편람 제정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표준절차 지침 제정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진행 총괄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서 규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증대상기관은 국내 소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한다.

② 인증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양성기관이 스스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제3조(인증기준)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위원회(이하 ‘동보위’)는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책임이 있다.

② 인증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 동보위 각종 위원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또는 고등교육평가 전문가 등의 제안을 2주간 수렴한다.

③ 인증기준의 적절성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단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④ 동보위가 승인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4조(인증주기) ① 인증대상기관의 인증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증 이외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증주기는 연장 또는 축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는 제출 기일에 따른다.

제6조(인증유형과 기간) 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인증(3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단축인증(2년):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불가: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④ 인증취소: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의사법 제16조의4, 2항1에 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⑤ 신설 양성기관 인증: 인증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제7조(신설 양성기관) 신설 양성기관이라 함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 이상의 동물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지칭한다.

제8조(인증절차) ① 인증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2.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및 인증대상 기관 선정
3. 서면평가
4. 방문평가
5. 최종보고서 작성
6. 재심요청 시 재심위원회 구성 및 평가
7. 인증판정 최종결정 및 종결
8. 결과통보 및 발표

제9조(인증평가와 인증결정) 인증평가와 인증결정은 인증평가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각각 별개로 수행하며 이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자격과 임기) ① 제 8조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물의 진료, 보건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수의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1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인증판정위원회가 인증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동보위 심의 및 결의를 거쳐,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② 동보위는 동물보건사 관련 공공기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결과활용) ①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은 수의사법 제16조의2의 1항에 의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인증결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13조(결과관리) ① 인증대상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료보관)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의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평가서, 보고서, 회의록, 전자우편 등의 목록과 기록물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되어 보관된 기록물은 분류기호와 일련번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제도개선) 동보위는 인증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 사전 및 사후 만족도 조사

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워크숍과 컨설팅

③ 인증평가위원 집단의 구성과 연수교육

④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⑤ 국내·외 교육인증기구와의 정보교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9조에 따른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판정위원회 위원장(이하 ‘판정위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판정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추천하는 5명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위원회가 송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인증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인증 결과를 승인한다.

② 최종보고서나 이의서의 심의 결과 인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평가단에 해당 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판정위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재심의) ①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동보위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 운영지침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로 한다.
-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여부 및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⑤ 재심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결과가 된다.

제7조(최종인증)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위원장은 즉시 그 결과를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보위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인증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9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또는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인사 중 10명 내외를 임명하여 구성하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동수로 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평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서면평가결과에 근거한 방문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가단 구성 및 운영
2. 자체평가보고서 적합성 심의
3. 최종보고서 심의
4. 연차보고서 심의
5.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동보위가 지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증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가인증을 하도록 위임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기관은 차년도 인증신청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만료 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지정한 제출일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평가단 평가위원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③ 서면평가는 동보위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7조(항목별 평가와 점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3점), 적격(2점), 미흡(1점), 부적격(0점)의 4단계로 한다.

- ②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든 항목이 적격(2점)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3년)으로 판정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1점)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으로 판정한다. 단, 2년 단축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하여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또는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⑤ 평가 시 유의사항인 “항목별 평가사항을 판정할 때 첫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1호, 2021년 11월 18일) 시행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인증규정 제10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을 위한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③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루어진다.
- ④ 방문평가는 1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 ③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⑤ 연수교육의 내용은 평가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 ⑥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양성기관 또는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인증평가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즉시 동보위에 최종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내규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 (이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해당 평가인증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3항에 따라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임명하고, 평가위원은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1항에 따라 평가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평가회차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회 평가단 구성 시 직전 평가단 중 40% 내외의 위원을 중임토록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업무)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영역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의 기본목적과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숙지
2. 평가편람(대학용 및 평가자용) 숙지 및 적용
3. 평가위원 연수교육 및 참석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5. 평가결과 협의 및 조정
6. 기타 관련 업무

제5조(평가단장의 업무)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책임자로서 평가단을 대표하며,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업무와 함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평가 표준절차지침의 각종 서식을 망라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단 회의 시 회의 주재
2. 평가단 전체의견 조율 및 조정
3. 평가위원 간 평가결과 조정
4. 기타 평가단 관련 업무

제6조(의결)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단의 결정에 따르고 관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은 평가단회의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재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 (이하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목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1항에 따라 해당 재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2항에 따라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은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3항에 따른다.

제4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서와 재심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 또는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기관은 위원회에서 직접 소명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 본인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결과)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최종인증결과가 된다.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인증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동보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유지관리 지침

제정: 2021. 06. 23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규정(이하 ‘인증규정’) 제13조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인증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중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재단의 변경, 학교의 소재지 이전, 정원의 변화 및 교과과정의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동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형식) 연차보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최근에 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편람(대학용)을 참고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시기) 최초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이후 제출은 매년 동일한 일자로 한다.

제5조(확인)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확인한다.

제6조(자료요청) 인증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활용) 인증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양성기관이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서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협의하여 청문이나 방문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취소)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양성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소명기회) 인증기간 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인증취소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심의) ① 소명이 접수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심의절차에 준한다.

② 소명 심의결과는 6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유지관리평가비용) 인증유지관리기간 중 인증유지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연차보고서 미제출, 중대사항 미신고 및 유지관리비용 미납 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 60일 이내 미이행 시 인증철회를 한다.

제13조(타 규정 및 관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규정 및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1. 07. 01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른 평가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또는 동보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이하 ‘동교협’) 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동보위와 동교협에서 동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주요임무)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증기준의 개발·수정·보완
- ② 인증기준과 관련된 제반 업무
- ③ 기타 동보위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5조(기준 검토) ①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부분적인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상시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보위에 회부한다.

제6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4조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자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사항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 관련자는 동보위가 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윤리지침

제정: 2021. 07. 01

1차 개정: 2022. 08.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이하 ‘관계자’)의 윤리 강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태도)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독립성)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유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얻게 된 정보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상 습득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행위의 금지) 관계자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청탁, 선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이해관계자 평가의 참여금지) ①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관계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현재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학생, 교수, 행정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관계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잠정적 협정 및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관계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대표직에 있었던 경우

4. 관계자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평가대상 동물보건사 양성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동보위’)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자문을 제외하고는 평가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관계자는 동보위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서약서)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약서(별지서식 제1호)에 서명하여 동보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동보위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본인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관계자(위원, 행정요원, 보조요원)로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윤리지침’ 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평가인증 관계자로서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비밀 유지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 명 _____

서 명 _____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귀하

